

[별표 1]

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(제42조제2항 관련)

1. 채권의 매입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.

매입 대상	매입금액
가.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	공사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자	토지형질 변경허가 면적 3.3제곱미터당 30,000원

비고: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위 표의 나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2. 채권 매입의무의 면제
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역세권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

- 1) 국가기관
- 2) 지방자치단체
- 3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
- 4)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- 5) 주한 외국정부기관
- 6)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

나.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

- 1)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
- 2)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
 - 가) 「주택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(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) 이하인 주택(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)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

나) 가)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(기부채납을 포함한다)되는 토지의 면적

3)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대상 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과 중복되는 면적

다. 시·도지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.

3.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. 다만,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,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.